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민형배·이정문·김영배

김문수 • 이수진 • 문정복

이연희 · 김용민 · 주철현

어기구 · 박홍배 · 조 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개시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합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습니다. 가맹본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본부 간 거래조건 협의 활성화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14조의2, 제33조 및 제35조).

법률 제 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 본문 중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한다"를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제14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제3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③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	<u>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u>
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	없으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
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	
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	
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	
적으로 협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제33조(시정조치) ①
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	
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u>제14조의2제5항</u> , 제1	<u>제14</u> 조의2제3항ㆍ제 <u>5</u>
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u>ठ</u> ो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	

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 회는 제6조의5제1항 · 제4항, 제 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 제2항, 제 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 제 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 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 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u>제14조의2제3항ㆍ제5항</u>

명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
① a ⓒ (청체코 가호)

② ~ ⑥ (현행과 같음)